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
		1차 위반	2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제조·수입·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	법 제86조제1항제1호	500	1,000
나.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86조제1항제2호	1,000	2,000
다.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	법 제86조제1항제3호		
1)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항		1,500	3,000
2) 제3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사항		1,000	2,000
3) 제34조제1항제2호의 사항		500	1,000
라.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·시료수거·출입을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,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물품·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	법 제86조제1항제4호	500	1,000